7

화학공장의 지게차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척수막전이암(원발병소 폐암의증)

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지게차 운전작업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
망 이 ○ ○ (남, 56세)은 2002.4.~2002.11. 8개월 간 D경비(주)에 입사하여 K(주) 울 산공장의 소방차기사 및 경비보조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무를 하던 중, 2002.12.7. A병 원에서 뇌척수막전이암(선암, 원발부위는 폐암의증), 뇌수종,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 다.

2 작업화경

근로자는 수송병으로 제대한 후 10년 이상 디젤엔진차량(버스)을 운전하였고, 33세 때인 1979.8. H(주)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2001.12. 퇴사때까지 22년 5개월 간 차량(버스, 승용차, 지게차)운전, 원료입고 및 제품출고업무를 하였다. 상기 사업장의 사용물질중 발암성 물질은 확인할 수 없었다. 직업력과 관련하여 경유차량운전작업을 장기간 즉 상기 사업장 입사전 10년 간(버스), 입사후 11년 간(지게차) 함으로써, 배기가스안에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된다. 그러나 정비작업이나 엔진 시운전 점검작업자가 아니므로 과거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02년 9월 2주 전부터 기침, 흉통, 발열증상이 있어, 우측혈액성늑막염

으로 흉부CT상 늑막암종이 의심되어 늑막천자검사를 받았으나, 악성종양세포는 보이 지 않았다. 두통과 양측 하지위약감이 있으나 뇌척수액검사상 종양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, 뇌CT 및 뇌MRI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. HRCT소견상 암보다 결핵가능 성이 크다고 하여, 결핵성뇌막염의심, 늑막삼출, 결핵성늑막염의심, 폐암 또는 기관지 암 의심으로 진단받았다. 이 후 뇌척수막전이암(선암)으로 진단되고 우측늑막전이 및 간경변증소견이 있었으나 원발부위로 추정되는 폐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. 상기 근로 자는 뇌척수막전이암(선암), 다발성골전이로 2002.12.7. 사망하였다.

4 결 론

망 이 ○ ○의 뇌척수막전이암은 선암(폐암 의심)으로 진단되었는데,

- ① 임상적으로 추정한 것처럼 폐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이 맞는다고 한다면,
- ② 운전 작업중 폐암 유발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 되지만, 운전업무가 주 업무로 정비작업인 주 업무인 근로자에 비해서는 노출수 준이 높다고 할 수 없고,
- ③ 반면 흡연량이 많지는 않으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 였을 가능성은 높으므로,

상기 근로자의 뇌척수막전이암은 원발부위가 폐암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작업에 의한 노출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.